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316호

병무청역세권(신길동 459-5번지 일원)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정정 고시

서울특별시 제2025-289호(2025.5.29.)로 고시된 「병무청역세권(신길동 459-5번지 일원)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」 중 지형도면 기재 착오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정정 고시합니다.

2025년 6월 19일
서울특별시장

I. 정정사유

- 서울특별시 제2025-289호(2025.5.29.)로 고시된 병무청역세권(신길동 459-5번지 일원)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내용 중 용도지역 결정(변경)도에 기재 착오사항 정정

II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사항

-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: 변경없음
②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1. 용도지역 결정(변경) : 변경없음
가. 용도지역 결정(변경)조서

구 분	면 적(㎡)			구성비 (%)	비고
	기정	변경	변경후		
계	34,056.8	-	34,056.8	100.0	
일반주거지역	34,056.8	감) 27,389.9	6,666.9	19.6	
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이하)	25,216.5	감) 18,549.6	6,666.9	19.6	도로, 공원
제3종일반주거지역	8,840.3	감) 8,840.3	-	-	
준주거지역	-	증) 27,389.9	27,389.9	80.4	

■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사유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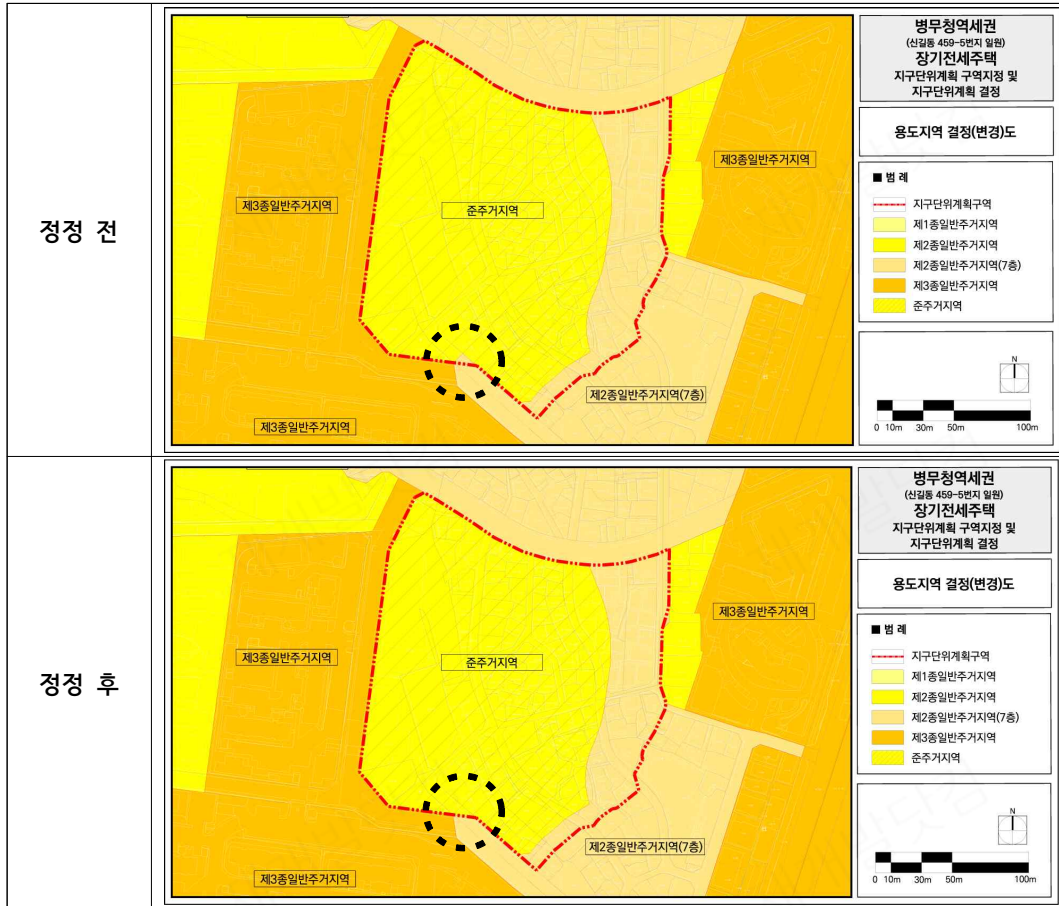
위치	용도지역		면적 (㎡)	결정(변경)사유
	기정	변경		
영등포구 신길동 459-5번지 일원	제2종(7층이하) (제3종일반 주거지역	준주거 지역	27,389.9	•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추진을 위해 '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'에 의거 용도지역 변경

2. 도시계획시설 결정 : 변경없음
3. 친환경 및 방재안전에 관한 결정 : 변경없음
4. 공공기여계획 결정 : 변경없음

- ③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 ④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III. 정정내용

○ 용도지역 결정(변경)도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이하)로 표기된 영등포구 신길동 1194번지 준주거지역으로 정정



IV. 관계도면 : 붙임 참조

※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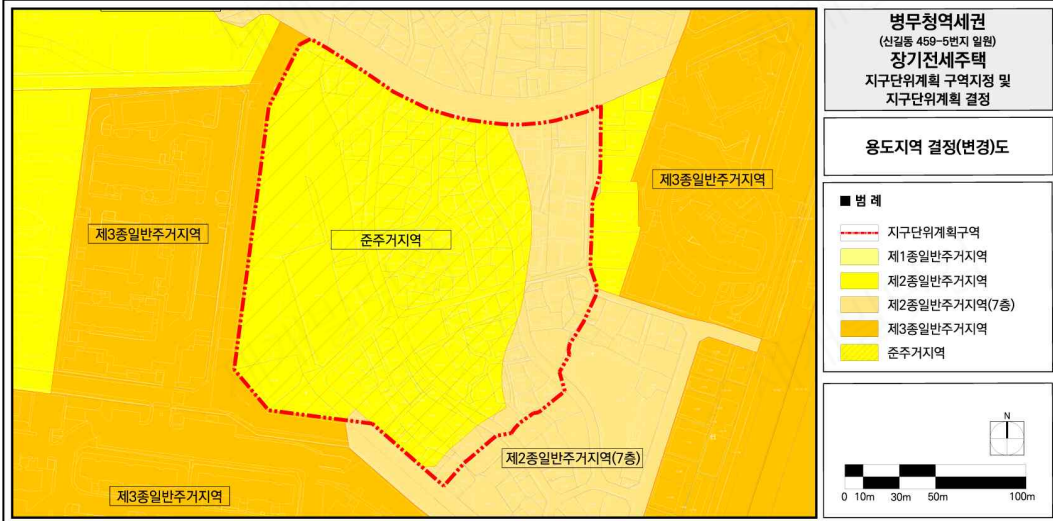
V. 열람장소

-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시청 공공주택과(☎02-2133-7059) 및 영등포구 도시계획과(☎02-2670-3541)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.
 ※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도시계획포털(<https://urban.seoul.go.kr>) 및 영등포구청 홈페이지(<https://www.ydp.go.kr>)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VI.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 등에 관한 사항

- 금회 상향 결정(변경) 된 용도지역(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이하), 제3종일반주거지역 → 준주거지역) 및 기타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사항 등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·인가·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, 해당 지구단위계획 지정 당시의 도시·군관리계획으로 환원됨을 고지합니다.

용도지역 결정(변경)도(정정 전)



용도지역 결정(변경)도(정정 후)

